

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

제 정 2006. 6. 30 기상청고시 제2006-35호
일부개정 2009. 8. 24 기상청고시 제2009-1호
(일몰제 도입을 위한 「기상요소별 관측방법」 등 일부개정)
일부개정 2012. 8. 23 기상청고시 제2012-1호
(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일부개정령)
일부개정 2014. 12.17 기상청고시 제2014-12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)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
2.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,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
3.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,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2.8.23>
[본조신설 2009.8.24]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06-35호, 2006.6.30>

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09-1호, 2009.8.24>

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기상청고시 제2012-1호, 2012.8.23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기상청고시 제2014-12호, 2014.12.17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